##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454

발의연월일: 2024. 9. 30.

발 의 자:김예지・김소희・서천호

구자근 • 박덕흠 • 서미화

한지아 · 최수진 · 신성범

김도읍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기표소에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해 기표소에 홀로 들어가 투표를 하기 어려운 선거인의 경우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투표보조 대상에 제외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도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이들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제157조제6항).

법률 제 호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7조제6항 중 "자신이 記票할 수 없는 選擧人"을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나 정신적 장애(「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말한다)로 인하여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
차) ① ~ ⑤ (생 략)	차)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選擧人은 投票所의 秩序를	6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	
께 투표소(초등학생인 어린이	
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	
다)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視	
覺 또는 身體의 障碍로 인하여	
자신이 記票할 수 없는 選擧人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
은 그 家族 또는 本人이 지명	이나 정신적 장애(「장애인복
한 2人을 동반하여 投票를 보	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
조하게 할 수 있다.	른 정신적 장애를 말한다)로
	인하여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
	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
	한 선거인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